

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23
----------	------

2022년 6월 21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7일
3. 상정일자 :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6월 1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

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(사무위탁)

나. 위탁기간 : 2022. 9. 15. ~ 2025. 9. 14.(3년)

다.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,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301호

라. 운영인력 : 8명

마. 소요예산 : 금563백만원('22년 예산)

- 인건비 398백만원, 운영비 69백만원, 사업비 96백만원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2. 5. 12.)

사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

- 제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추진 필요성

- 성차별적 사회·문화 구조 속에서 직장생활과 임신·출산·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이 겪고 있는 모성보호·노동권 관련 고용차별,

가정 내 갈등, 심리정서 문제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
노동법률·심리 분야의 종합상담 지원 필요

-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변호사 등
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
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
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

사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
제25조

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광모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¹⁾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한다)제4조의3제1항²⁾³⁾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- 직장맘지원센터는 임금노동과 가사·양육노동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해결 지원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45조⁴⁾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, 여성의 모성권리 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⁵⁾되었음.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
 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 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 - 3)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재위탁에만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재위탁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「민간위탁조례」가 개정(시행 2021.12.30.)되었음.
 - 4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직장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5) 최초 설립시 “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”라는 명칭으로 마포구에 개소하였다가, 공간 협소 및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2014년 광진구로 이전하였고, 2019년 3월 “서울특별시 3·8 여성종합대책”에 따라 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”로 명칭이 변경되었음.

- 이후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한 근거리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여, 2016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(금천구 소재), 2017년에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(은평구 소재)를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. **【붙임1 참고】**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과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.
 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 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민간위탁 추진 경위>

- '16. 6월 :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립·운영계획 수립
- '16. 9월 :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'17. 8월 :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
 - 1회차 공개모집 '17. 9. 15. ~ '19. 9. 14.(2년, (사)노동희망)
- '17.11월 :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개소식
- '19. 4월 : 재위탁 시의회 보고
- '19. 8월 : 재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
 - 2회차 공개모집 '19. 9. 15. ~ '22. 9. 14(3년, (사)노동희망)
- '22. 4월 :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 수립
(양성평등정책담당관-20893, '22. 4. 8.)

- 한편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같은 시기 평가를 받은 전체 19개 사무의 평균 77.82점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전환 성과 등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79.97점을 기록하였으나, 계획적인 내부시스템 구축과 전략 수립 및 실행 요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나타났음⁶⁾.

<2022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>

주요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▶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직장맘 고충 및 불이익 처분 관련밀착상담 및 전담 시스템을 활용해 권리구제를 강화, 찾아가는 상담으로 현장밀착형 상담을 강화하여 성과 창출 ▶ 직원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근무평가를 실행하고 있고,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행하여 긍정적인 개선실적을 보임
개선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체계적인 환경 분석에 의해 선제적이고, 계획적 차원의 내부 시스템 구축과 전략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됨 ▶ 총 예산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 투입률이 높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 ▶ 장기적 발전과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목표와 필요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

6) 서울특별시(2022.4), “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-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” ;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(2022.5.12.), 2022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, 서울정보소통광장.

법치국가의 원리 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⁷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우선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⁸⁾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- 또한 같은조례 제57조⁹⁾에서 “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¹⁰⁾ 및 제6조¹¹⁾

-
- 7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8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- 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 - 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- 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9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9.12.31>
 - 10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- 1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등에서는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로서 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맘(대디)대상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·부성권보호 및 일생활균형, 가족돌봄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,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고용노동부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/서초고용센터,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기관(시립 4개소, 구립 17개소), 「서울특별시 일·생활 균형 지원 조례」에 따른 “일생활균형지원센터”¹²⁾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맘지원센터만의 전문적인 특화사업 시행과 함께, 직장맘들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- 12) 현재는 조례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설치·운영되고 있지 않으나,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팀단위인 ‘일·생활균형지원센터’에서 서울시 기업 및 시민 대상으로 일·생활균형 진단 및 컨설팅, 문화조성, 연구 및 교육,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.

- 또한 시장 공약인 “서울혁신파크(舊국립보건원부지),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” 추진 일정에 맞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혁신파크센터 공간에서 2023년 말까지 퇴거 및 이전을 협의 중에 있는 바¹³⁾, 향후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공간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13) 서울특별시 사회협력과(2022.2.24.),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TF 구성·운영 계획, 사회협력과-1851)

<붙임1>

직장맘지원센터별 운영 현황(2022)

구분	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								
위치	 광진구 아차산로 30길36, 동부여성발전센터 내 1층	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, 가산W센터 312호	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내 미래청 301호								
규모	122㎡(약37평)	150㎡(약45.5평)	94.67㎡(약28.6평)								
주요시설	사무실 및 상담실 (동부발전센터 내 교육장 활용)	사무실 및 상담실	사무실 및 상담실 (혁신파크 내 교육장, 회의실 등 활용)								
주요기능 (특화기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맘 3고층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: 노동권, 모성보호, 보육, 심리상담 등 직장맘 윈스톱종합연계정보 수집·제공 직장맘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직장문화 개선 등 컨설팅 추진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간 SNS, 뉴스레터 등 홍보추진 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일·생활균형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모성보호 영상 콘텐츠 개발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북권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서북권 직장맘든든맵 사업 추진 								
개소일	2012.4.1.	2016.7.20	2017.11.24.								
위탁현황	2021. 1. 1. ~2023. 12. 31.(3년)	2021. 5. 1. ~2024. 4. 30.(3년)	'19. 9.15~ '22. 9.14.(3년)								
수탁법인	성동희망나눔(대표:이일순)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(대표:배현진, 이경석)	(사)노동희망(대표:김장민)								
인력	9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6)	9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6)	8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5)								
2022년 예산	664,416천원 ※ 민간위탁사업비 11,700천원 별도	640,254천원	562,978천원								
운영실적 (' 22년 5월) (단위:건/명)	모성권리보호						남녀고용 평등	가족 친화	자녀 돌봄	특화 사업	역량 교육
	센터명	소계	직장내	가족 관계	개인	밀착 지원					
	합 계	4,937	4,857	17	63	469	141	5,431	147	3,179	3,608
	동부권	1,208	1,161	10	37	114	123	4,133	20	1,909	1,320
	서남권	1,244	1,230	0	14	96	11	8	122	1,030	859
서북권	2,485	2,466	7	12	259	7	1,290	5	240	1,429	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나.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(사무위탁)
- 나. 위탁기간 : 2022. 9. 15. ~ 2025. 9. 14.(3년)
- 다.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,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301호
- 라. 운영인력 : 8명
- 마. 소요예산 : 금563백만원('22년 예산)
- 인건비 398백만원, 운영비 69백만원, 사업비 96백만원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2. 5. 12.)

사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제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성차별적 사회·문화 구조 속에서 직장생활과 임신·출산·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이 겪고 있는 모성보호·노동권 관련 고용차별, 가정 내 갈등, 심리정서 문제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법률·심리 분야의 종합상담 지원 필요
-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

아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

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박주연 (☎2133-5022)